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49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준형 · 서왕진 · 차규근
황운하 · 김재원 · 신장식
정춘생 · 강경숙 · 김선민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는 남한을 왕래하기 위해 반복적·계속적으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일회적 여행이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도 함께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여행증명서의 특례)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여행증명서의 특례) ①</u> <u>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u>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u> <u>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u> <u>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u> <u>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u> <u>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안</u> <u>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u> <u>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u> <u>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그</u> <u>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여</u> <u>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끝</u> <u>날 때까지 횡수의 제한 없이</u> <u>사용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여행</u> <u>증명서는 그 명의인이 외국 국</u> <u>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의</u> <u>여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효</u> <u>력을 잃는다.</u> <u>④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의</u> <u>발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